

보호시설(제2조제1항제10호 관련)

1. 제1종보호시설

가.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(4)의 경우에는 공작물을 포함한다)

- 1)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
- 2) 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
- 3) 「영유아보육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
- 4) 「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
- 5) 「노인복지법」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로당
- 6) 「청소년활동진흥법」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
- 7) 「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
- 8) 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 및 병원급 의료기관
- 9) 「도서관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
- 10)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
- 11) 「공중위생관리법」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숙박업 및 목욕장업의 시설
- 12) 「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
- 13)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6호에 따른 종교시설
- 14) 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29조제1항에 따른 장례식장

나. 사람을 수용하는 건축물(「건축법」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하며, 가설건축물과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8호가목에 따른 창고는 제외한다)로서 사실상 독립된 부분의 연면적이 1천㎡ 이상인 것

다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5호가목·나목 및 라목에 따른 공연장·예식장 및 전시장에 해당하는 건축물,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「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 4에 따라 산정된 수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건축물

라.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로서 사회복지시설 신고증에 따른 수용 정원이 20명 이상인 건축물

마. 「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건축물 및 「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5호에 따른 천연기념물등으로 지정된 건축물

2. 제2종보호시설

가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

나. 사람을 수용하는 건축물(「건축법」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하며, 가설건축물과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8호가목에 따른 창고는 제외한다)로서 사실상 독립된 부분의 연면적이 100㎡ 이상 1천㎡ 미만인 것